

평창군 햄프전시체험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

의안 번호	27
----------	----

제안연월일 : 2018. 7. .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」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「평창군 햄프전시체험실」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평창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.

2. 추진개요

- 법적근거: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, 유지관리 성격의 재산
- 재산소재: 평창군 방림면 고원로 1247 일원
- 위탁시설: 건물 3동(연면적 666.45㎡), 토지 2필지(면적 3,374㎡)
- 위탁기간: '18. 9. 4. ~ '21. 9. 3.(3년)
- 사 용 료: 수익시설로 사용시(매년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/1,000부과)
- 수탁자 선정: “공개모집”
 - * (기 수탁자) 수동영농조합법인, '16. 9. 4. ~ '18. 9. 3.
- 추진절차

- ① (추진계획수립 및 방침결정) 수탁자 선정기준, 위탁시설 등 결정
- ② (군 의회 동의) 민간위탁 사무
- ③ (적격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) 평창군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
- ④ (수탁기관 선정) 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,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결정
- ⑤ (위·수탁협약 체결) 협약서 작성, 위탁기간 3년
 - * 위탁내용, 위탁기간, 사용료에 관한 사항, 수탁자의 의무, 계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.
- ⑥ (시설 인수·인계) 인수·인계서 작성
- ⑦ (공증) 협약내용

3. 주요 추진일정

-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및 방침결정: '18. 7월
- 군 의회 동의(민간위탁 사무): '18. 8월

- * (법적근거)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」 제7조(의회의 동의)
- * (조례내용/ 제1항) 군수는 제6조 따라 위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을 위탁예정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.

-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: 8. 20까지 (7일간)

- * (공고방법) 평창군 홈페이지에 공고
 - 1차 공고시 대상이 없거나 신청자가 1인 경우 재공고
- * (신청자격)
 - 공고일 현재 평창군에 주사무소를 두고, 시설을 활성화 할 적극적인 의지와 마인드 및 시설목적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으며,
 - 햄프(대마,삼)를 재배·생산하고 있거나, 햄프 제조·생산 관련기구 및 장비보유, 또는 관련 체험행사 개최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- 평창군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: '18. 8. 20.

- * (법적근거)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」 제11조
- * (위원구성) 6명(공무원 2, 의원1, 민간인 3), 위촉직
- * (심의사항)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·선정

-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 및 선정: '18. 8. 24.
- 심사결과 보고 및 수탁자 선정 개별 통보: '18. 8. 24.
- 위탁 협약체결: '18. 8. 27.

4. 기대효과

- 햄프를 소재로 농가 소득증대와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
- 폐교를 활용한 커뮤니티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에 기여
-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 및 향후 활용방안 제시

헴프전시체험실 주요시설 및 비품내역

구 분	소재지	지 번	지 목	구조·품목명	수 량	용 도	비 고
토 지	방림면 계촌리	249-1	학		3,006m ²	건물 부지	
건 물	소 계				666.45m ²		
	방림면 계촌리	249-1	학	철근콘크리트	385.62m ²	전시체험실	2층건물
	방림면 계촌리	249-1	학	시멘트벽돌	248.16m ²	사료관(구교사동)	단층건물
	방림면 계촌리	249-1	학	경량철골	32.67m ²	숙 소	단층건물
운 영 물 품	방림면 계촌리 (전시체험실 내)	249-1	학	컴퓨터	1대	사무용 기기	1층 (사무실)
		249-1	학	복합사무기	1대		
		249-1	학	책 상	1대		
		249-1	학	캐비닛	1개		
		249-1	학	의 자	1개		
		249-1	학	수강용탁자	20개	교육용 기기	1층 (공동 구관장)
		249-1	학	수강용의자	40개		
		249-1	학	빔프로젝트	1대		
		249-1	학	앰프	1대		
		249-1	학	이불장	3개	체험용 가구	2층 (숙박동)
		249-1	학	거실장	3개		
		249-1	학	홀딩도어	1식	기타운영 기기	1층 (공동 구관장)
		249-1	학	석유히터	1대		
		249-1	학	냉난방기	1대		
		249-1	학	주방기기	1식		
249-1	학	블라인드	1식	1,2층			
전 기 시 설	방림면 계촌리 (전시체험실 지붕)	249-1	학	태양광발전시설	1식	전기시설	체험실 옥상

관계법령 발췌서

①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③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

제22조(관리위탁 행정재산)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에 따른 사용·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·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.

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·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·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,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.

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3.21>

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.

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.

④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

제4조(대상사무)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
2.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
제10조(선정방법) ①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법인·단체 등은 신청서와 해당 사업계획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선정기준에 관하여 검토하고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의회에 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며,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.

제12조(협약체결 등)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재협약대상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. 이 경우 협약사항은 공증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되면 해당 협약사항을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,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.

⑤ 평창군 햄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조례

제4조(관리위탁) ① 평창군수는 전시체험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의 선정방법 및 협약체결에 관하여는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③ 전시체험실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만 관리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만료 60일 전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